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7
----------	-----

2019. 7.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7. 01. 전인수 의원 등 10명

나. 상정의결

-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19. 7. 18.)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전인수 의원)

-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예우 및 홍보(안 제5조)
- 라. 지원(안 제6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상원)

- 안 제2조(정의)에서 “병역명문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1)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으로 규정 하였으며,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로 규정하였음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의 개발·시행을 노력 하도록 규정한 바, 「병역법」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별다른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나, 「헌법」 3)상 ‘국방의 의무’, 「지방자치법」 4)의 ‘규정(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규정이 아니면 법률의 위임없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음)’ 그리고, ‘구청장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임을 고려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1)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18조(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서 및 별표 2의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출납)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3)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안 제5조(예우 및 홍보)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예우하고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규정하여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지원)는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사용료·수강료·진료비·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음. 향후,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각각의 해당 조례(「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조례」 등) 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장기적으로 지원사업(보훈 기념일에 표창 및 위문, 위문금 지급 등)의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본 조례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울시 및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현황⁵⁾ 등을 비추어 보면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나, 중앙정부 사업을 구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임.

또한, 강남구내 병역명문가(가족)의 현황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조례 제정 후 병역명문가 지원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실행계획 및 의지, 제도 마련 등의 논의도 필요해 보임

5) 조례 제정 현황(2019년 7월 현재)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병무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 답 변: 서울시 자치구 중 11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음
- 질 의: 우리 구에 병역명문가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신청을 하는 것인지
- 답 변: 병무청에서 마련한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등록된 대상자는 46가구에 239명이며,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한 가구 현황임
- 질 의: 본 조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인지
- 답 변: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려움
- 질 의: 3대가 다 병역의무를 이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 답 변: 1대인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2대인 아들들, 3대인 손자들까지 모두 병역의무를 이수해야 대상이 됨
- 질 의: 병역명문가증은 대상자에게 다 발급하여 주는 것인지
- 답 변: 병역명문가 증서는 가문에 한 개만 발급되며, 병역명문가증은 대상자들에게 모두 발급됨

7. 토론 요지

- 토론과정 중, 이재민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자구 및 문장표현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147호

발의일자 : 2019. 07. 18.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수정안 제1조, 제2조 제1호, 제5조제2항, 제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주민에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으로부터”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병역문가증을”을 “병역명문가증을”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노력해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u>주민에게</u>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으로부터</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 및 <u>병역문가증을</u>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p> <p>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 ----- - <u>병역명문가증을</u> ----- -----.</p> <p>2.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p> <p>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u>노력해야 한다.</u></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3.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 ----- ----- <u>노력하여야 한다.</u></p> <p>제8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p>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
----------	-----

발의연월일 : 2019. 7. 1.

발 의 자 : 전인수·김진홍·최남일·

이호귀·김영권·이향숙·

이재민·김세준·이재진·

한윤수(이상10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예우 및 홍보(안 제5조)
- 라. 지원(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 및 병역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수강료·진료비·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